

임대보증금보증 채무약정서(법인매입임대사업자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약정인은 귀 공사로부터 귀 공사의 규정이 정하는 위 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귀 공사에 대한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약정서를 반으로 접어 간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인 (임대 인)	주 소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약정인 (임대 인)	주 소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	------------------------------------	------------------	------------------------------------

제1조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_____ 원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한

- ①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귀 공사로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사이에 발급 받은 임대보증금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로 하고, 귀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서는 약정인의 신청에 따라 제1조의 보증금액을 거래한도액으로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수시로 발급받기로 합니다.
- ② 제1항과 불구하고,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의무이행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비율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귀 공사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 관계법령등에 의한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여 귀 공사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4조 담보제공

- ① 약정인은 귀 공사 소정의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② 귀 공사에 대하여 약정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증료

- ①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귀 공사의 소정 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귀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겠습니다.
- ② 귀 공사의 보증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1항의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겠습니다.
- ③ 제2항의 따라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를 귀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가 보증료에 대하여 납부지정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5퍼센트로 날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보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겠습니다.
- ④ 약정인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보증료 환불이 유보된 경우 약정인은 미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 통지의무

- ① 약정인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귀 공사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등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조 면책사항

- ①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의 문서에 사용한 인장이 귀 공사에 신고된 인감과 대조하여 이를 보통의 주의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위조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② 이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하여 약정인이 제출한 서류를 귀 공사가 보통의 주의로써 취급한 때에는 추후 그 서류에 위조·변조 기타 사고가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8조 배 상

- ①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배상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 공사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제9조 부대채무

귀 공사에서 지급한 채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소송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공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

제10조 사전구상

약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며,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였으며, 귀 공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귀 공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2. 귀 공사에 대한 이 약정 또는 각종 약정상의 의무나 보증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
3. 귀 공사의 채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
4. 약정인이 귀 공사에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약정인의 채권자가 귀 공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한 때

제11조 변제충당

-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당보물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당보물로 채무잔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인장·상호·대표자·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13조 관련법령등

- ① 약정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법령 등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법령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이 개정 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자동연장 등

- ① 임대사업자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령 및 귀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여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 약정인은 별도의 보증계약 갱신이 없더라도 이 약정서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약정인은 보증약관으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 공사의 조치에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15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약정인은 귀 공사가 이 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한 약정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귀 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이 약정서로 동 내용에 대해 위임 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제16조 합의관할

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귀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귀 공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약정인과 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 특약사항

- ①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4조제2항 및 전항의 담보는 귀 공사에서 정한 방법 및 가액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귀 공사가 제10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상계권 행사를 포함한다)하더라도 약정인은 민법 제443조에 의한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 등 기타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약정인은 이 약정서의 위 각 조항과 별도 수령한 보증약관 내용 및 약정인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서명 / 인)

____년 ____월 ____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귀 공사와의 (보증)채무약정, 채권관리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회사가 본인(개인인 약정인,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보증 발급 및 보증료 납부(환불) 안내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본인 부당산현황,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하시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등) ☐ 업무수탁자 :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위탁업체, 보증체결·유지·관리·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무법인, 임차목적물 관리소, 알림록 서비스 제공업체 등) ☐ 행정·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제공·조회의 목적	약정인(법인인 경우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대표자, 경영실권자, 과점주주 등)의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판단, 신용 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신용도 판단,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조회 하는 사항] ☐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조회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공·조회됩니다. 단, 보증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평가 효력과 법인의 (보증)채무약정에 관계된 동의자 개인의 (보증채무)약정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유효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하시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고충권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본 동의서는 본인이 관계자 (대표자, 경영실권자 등)인 다른 회사가 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내 용		동 의 자 (본인)	
수집·이용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조회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조회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공사는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제공여부 확인서[공동약정인·연대보증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① (공동약정의 경우) 귀 공사가 보유한 공동약정인간의 신용정보를 상대방약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동약정인은 상호간의 제공한 약정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가 이 약정의 체결 여부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② (연대보증의 경우) 귀 공사가 보유한 약정인의 신용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서 제공한 약정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가 이 약정의 체결 여부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제공받은 약정인의 신용정보

※ 약정인의 신용정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여부 확인란에 “v” 표시 할 것

약정인의 신용정보 사항	대상여부 확인란
공사의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고객의 대표자등이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등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신청	
국세 및 지방세 연체	
공사의 융자원리금(이자1개월 연체포함)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연체	
공사가 약정인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에 강제집행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이 접수(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제외)	
공사에 대한 채무를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 기일에 미상환	
고객상시모니터링지침이 경보 또는 주의	
기타 세칙 제7조에서 정한 사유 ()	

20 년 월 일

약정인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성명 :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약정인 주소 : _____
 또는 상호 : _____
 연대보증인 성명 :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 공동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